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시행 2027. 01. 01.] [여성가족부고시 제2026-15호, 2026. 05. 27. 전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분담)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업무의 분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가족부

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관리법령·제도·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

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시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위탁기관 지도·협조에 관한 사항

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

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나. 청소년지도사 자격 연수에 관한 사항

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라.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항

마. 청소년지도사 데이터베이스(DB) 등 관리 시스템 운영

바. 2급 자격 서류심사 시행계획의 수립·공고에 관한 사항

사. 2급 자격 서류심사 관련 서류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아. 2급 자격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청소년지도사 자격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예정 확인서, 자격 취득 확인서 등 관련 사항

3.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인력공단”이라 한다)

가. 1급 시험 시행계획의 수립·공고에 관한 사항

나. 1급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에 관한 사항

다. 1급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1급 시험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1급 응시자격 관련 서류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바. 1급 채점, 합격자 결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1급 자격검정 시행(각종 확인서 발급 등) 관련 사항

제3조(설치)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활동진흥원 내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검정 및 연수의 방향방침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별표2에 명시된 유사한 경력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자격검정과목의 유사교과목 인정에 관한 사항

4. 자격검정 시험의 출제, 채점, 자격 서류심사 등 전형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임기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 위원장은 활동진흥원 활동사업이사가 되고, 활동진흥원의 연수본부장, 인력공단의 전문자격국장,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 학계, 그 밖에 관련 전문기관 등의 청소년육성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의 대리)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되,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검정실시기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위탁실시기관은 1급은 인력공단, 2급은 활동진흥원으로 한다.

제11조(이수과목의 인정범위) ① 시행령 제19조제3항 별표 2에 따라 「청소

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과 관련된 이수과목의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으며, 과목명에 론·학·연구·과정·세미나·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도 인정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23조의2에 따라 편입학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검정 방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급 객관식 필기시험은 5지 택일형을 원칙으로 한다.
2. 2급 자격 서류심사는 검정시행계획에 따른다.

제13조(검정시행계획) 자격검정의 실시는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인력공단 이사장과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협의하여 각 급수별 검정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검정 시행공고 30일 전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

다)는 별표3의 서류를 1급은 인력공단 이사장에게, 2급은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간제 등록자 등의 제출 서류) 시간제 등록 등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검정과목 이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원서교부 및 접수) ①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검정 응시원서(이하 “원서”라 한다) 접수는 수험자가 인력공단의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의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 서류심사 접수는 활동진흥원의 홈페이지의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자격검정 수수료) 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응시유형	필기	자격 서류심사	계
1. 1급 필기응시	40,000원		40,000원
2. 2급 서류심사		25,000원	25,000원

② 수수료 징수는 원서 접수 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한다.

제18조(자격검정 수수료 반환기준)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잘못 납부한 금액의 전부
2. 검정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필기시험 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5. 필기시험 시행일 2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의 100분의 60

6. 2급 자격 서류심사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제19조(문제출제)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출제위원에게 검정문제와 정답을 작성·제출하도록 의뢰한다.

② 검정문제 출제는 합숙출제방식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제된 문제는 해당 과목별 합숙출제위원이 검토를 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정하고 재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정·재구성된 문제는 최종 검토를 통해 시험지 형태로 편집·출제한다.

⑤ 합숙출제위원은 검정부정방지를 위하여 시험문제를 복수유형으로 변형하고 편집·출제할 수 있다.

⑥ 합숙출제위원은 등급별, 유형별, 문항별 정답을 표시한 정답표를 작성한다.

⑦ 인력공단 이사장은 시험문제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합숙출제위원 및 시험문제지 인쇄·관리위원을 필요한 기간동안 별도 장소에 격리하여야 한다.

⑧ 인력공단 이사장은 문제의 출제와 관리 등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시험문제지 인쇄 및 인계인수)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출제된 시험문제지를 지정된 장소에서 인쇄하여 시험시행일 1일전까지 소속기관 시험시행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시험시행 책임자는 시험문제지를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험문제 인쇄·포장 및 인계인수 방법, 보안대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시험본부 설치·운영 등)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자격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력공단 본부에는 총괄본부를, 각 시험장에는 시험장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총괄본부 및 시험장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시험위원 등의 위촉·활용)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원활한 자격검정 관리를 위해 분야별 시험위원을 위촉·활용할 수 있다.

② 시험위원 위촉·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시험위원의 임무)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시험장책임자”는 지역별 해당시험장의 책임자를 말한다.
2. “시험위원”은 감독위원, 본부요원, 관리위원, 지도위원 등 시험집행과 관련하여 위촉·활용하는 내·외부의 모든 인력을 말한다.
3. “감독위원”은 원활한 시험집행을 위해 위촉·활용하는 교실감독과 복도감독을 말한다.
4. “복도감독”은 시험실 복도에서 교실감독의 감독업무 지원 및 시험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본부요원”은 필기시험 등 자격시험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운영하

는 인력공단 직원을 말한다.

6. 그 밖의 시험위원의 임무는 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시험실 편성 및 시험감독) ① 1개 시험실에는 수험자 30명 내외를 기준으로 편성하되 부정방지를 위해 적정 간격을 두어 좌석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험장은 시험시행일 1일전에 본부요원으로 위촉된 인력공단 직원이 출장하여 사전 점검토록 한다.

③ 시험 감독을 위하여 1개 시험실에 2명의 감독위원(정·부)을 둔다.

④ 감독위원은 시험장책임자 또는 복도감독으로부터 시험문제지 및 답안카드(답안지 포함, 이하 같음)를 인수받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답안카드는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⑤ 감독위원은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시험실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응시자를 발견한 때에는 시험장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퇴실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카드를 정확히 회수하여야 한다.

⑦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카드 봉투표지에 응시현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날인한 후 본부요원의 확인을 받아 문제지와 함께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답안카드 판독 및 채점, 자격 서류심사 등)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시험시행기관별로 필기시험 답안카드의 판독 및 채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점이 완료되면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고 그 명단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답안카드 판독 및 채점, 합격예정자 공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④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2급 자격 서류심사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자격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고 그 명단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자격 서류심사, 합격예정자 공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수당)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시험위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자격검정합격자)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1급 자격검정합격자의 수험번호를 시행공고에 명시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인력공단 이사장은 1급 합격자 명단을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후 합격 취소자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2급 자격 서류심사 자격검정합격자의 수험번호를 시행공고에 명시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자격검정 서류의 관리)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응시서류, 답안카드(답안지)를,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2급 자격 서류심사 자료를 ‘국가전문자격 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보관한다.

② 자격검정 종료 후 인력공단 이사장은 해당 연도의 필기시험지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기간이 지난 응시서류, 답안지를, 활동진흥원 이사장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기간이 지난 2급 자격 서류심사 자료 폐기하고, 폐기할 때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시험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 자격 서류심사 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 및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련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경력인정의 내용 및 기준) ① 시행령 제19조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에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② 시행령 제19조제2항 별표 1에 따라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경력인정 기준일은 1급은 응시자격 서류제출 마감일, 2급은 자격 서류심사 접수 마감일로 한다.

④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경력으로 인정한다.

⑤ 일용직근로자는 근로일수로 계산하여 경력으로 인정한다.

제30조(경력인정의 방법) ①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에 대한 인정은 그 업무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력점수 산정은 1월을 1점으로 경력환산 점수 비율에 따라 산정하되, 1년 경력은 12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31조(경력인정의 신청)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중 일정기간의 경력인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내용과 기간 또는 시간 등이 명시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1급 응시자는 인력공단 이사장에게, 2급 자격심사 접수자는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경력인정의 취소) 인력공단 이사장과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급 응시자격 및 2급 자격 서류심사를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경력환산의 내용) 시행령 제19조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는 연수 및 교육은 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청소년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와 활동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전문연수교육으로 한다.

제34조(경력환산의 기준 및 방법) ① 시행령 제19조제2항 별표 1에 따라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자의 경력환산 점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문연수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경력환산은 연수를 받은 시간을 점수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단, 경력환산점수는 최대 12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무보수교육의 경력환산점수는 최대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전문연수교육을 받은 시간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환산점수는 20시간당 1점으로 산정한다.
3. 자격취득이전에 받은 전문연수교육은 차기 자격취득에 필요한 경력으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② 경력환산 기준일은 1급은 응시자격 서류제출 마감일, 2급은 자격 서류

심사 접수 마감일로 한다.

제35조(경력환산의 신청) 전문연수를 받은 시간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문연수를 받은 과목과 시간 및 기간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1급은 인력공단 이사장, 2급은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경력환산 인정의 취소) 인력공단 이사장과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경력환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력환산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7조(연수의 과정 및 내용·시간) 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1급·2급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로 운영한다.

② 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활동의 이해
2. 청소년 활동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실습
3. 청소년지도사간의 정보교류 및 연계
4. 그 밖에 청소년육성 및 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제38조(연수시행계획)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인력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연수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연수실시 40일 전까지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연수시행계획 공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시행계획 공고 시 자격연수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수시간, 장소, 내용, 방법 등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인력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연수등록) ①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연수과정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참가신청서를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수과정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시행령 제37조의2,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하거나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연수과정 수수료) 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 수수료는 81,000원으로 한다.

② 연수과정 수수료 징수는 연수과정 접수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한다.

제42조(연수과정 수수료 반환기준) 연수과정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잘못 납부한 금액의 전부
2. 연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연수 개강일 이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연수과정의 1/3 경과 전 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70
5. 연수과정의 1/2 경과 전 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6. 연수과정의 1/2 경과 후 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불가

제43조(연수평가 및 결과보고 등) 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생의 생활태도, 참여도,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료여부를 결정한다.

②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 수료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지도사 연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4조(강사수당·여비 및 연수지도 수당) 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강사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강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생 생활 및 분임토의 등을 지도하는 담당직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연수지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자격증 교부기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 업무는 활동진흥원에 위탁한다.

제46조(자격증 교부) 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수료자에게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명의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자격증발급일은 자격연수를 수료한 해당월의 마지막일자로 한다.

③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교부하거나 정부24 민원시스템 또는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④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자격증 교부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처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7조(자격취득 확인서 등)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 등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확인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예정 확인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합격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제48조(시행세칙) 자격검정 및 연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 및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따로 정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예산의 운영 등) ① 자격검정 및 연수를 위한 소요경비는 국가지원, 자격검정 응시수수료, 연수과정 수수료 및 그 밖의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자격검정 및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격검정 응시수수료, 연수과정 수수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제50조(재검토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7.1.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이수과목의 인정범위(제11조 관련)

등급	현행 자격검정 과목	과목 인정범위
1급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인권과 복지」 과목 이수자
2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정책론」 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활동	「청소년수련활동」 과목 이수자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문제」 과목 이수자

[별표 2]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범위와 내용(제29조제2항 관련)

종 사 분 야	경력환산 점수 (1월당)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7조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5.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의 규정에 의한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8.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평등가족부에서 확정하여 시행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근무한 경력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설치·지정한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9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내일이룸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10. 제1호~제9호의2와 유사한 경력으로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경력 	1점	1점은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 1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 12. 「아동복지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제3조제11호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1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교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관 등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13의2.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등에서 청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한 경력 13의3.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된 Wee 스쿨, Wee 센터, Wee 클래스에서 지도·상담 등의 업무로 채용되어 종사한 경력 1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중 ‘청소년 지원시설’에 종사한 경력 15. 「경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 및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과)에서 청소년보호·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 16. 제11호~제15호와 유사한 경력으로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경력 	0.5점	

[별표 3] 응시자의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명	비 고
<p>1. 1급 응시자 제출서류</p> <p>가.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 중 사경력 3년 이상인 자</p>	<p>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응시원서 1통 (사진 포함) 온라인 작성</p> <p>(1)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p> <p>(2)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경력인정 증빙서류 원본 각 1통.</p> <p>(3)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하나의 사본 1통(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p> <p>단,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자격검정기관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경력증명서류를 직접확인 하는데 응시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p> <p>※ 부동의시에는 직접 제출</p> <p>(4)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 및 청소년지도사보수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하며, 전문연수 <2003년 7월 이후에 한함> 및 청소년지도사보수교육<2006년 ~2012년에 운영된 교육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이수한 자>은 청소년 담당 정부부처 지원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 및 보수교육에 한하여 인정)</p> <p>(5)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통(해당자에 한하며,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p>	<p>인력공단 Q-net</p>
<p>2 2급 자격 서류심사자 제출서류</p> <p>가. 자격 검정 9과목(현장실습 포함)을 모두 이수하고 전문대 졸업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p>	<p>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응시원서 1통 (사진 포함) 온라인 작성</p> <p>(1) 졸업증명서 원본 1통</p> <p>(2) 해당 검정과목 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통 (검정과목 중 시간제 이수과목 포함 시 제15조 참조)</p>	<p>활동진흥원 홈페이지</p>

구 분	제출서류명	비 고
<p>나.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2년 이상인 자</p>	<p>(1)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p> <p>(2)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경력인정 증빙서류 원본 각 1통.</p> <p>(3)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하나의 사본 1통(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p> <p>단,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자격검정기관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경력증명서류를 직접확인하는데 응시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p> <p>※ 부동의시에는 직접 제출</p> <p>(4)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 및 청소년지도사보수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하며, 전문연수 <2003년 7월 이후에 한함> 및 청소년지도사보수교육<2006년 ~2012년에 운영된 교육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이수한 자>은 청소년 담당 정부부처 지원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 및 보수교육에 한하여 인정)</p>	
<p>다.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취득 후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한 사람</p>	<p>(1)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p> <p>(2) 해당 검정과목 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통 (검정과목 중 시간제 이수과목 포함 시 제15조 참조)</p>	

제 호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수료증

성 명 :

생년월일 :

자격등급 : 급

연수기간 : ~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연수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직인)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확인서

발급번호 :

신청인 (취득자)	성명		생년월일	
--------------	----	--	------	--

자격취득사항			
자격등급	자격번호	자격증 교부일	발급처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직인)

CONFIRMATION OF ACCREDITED YOUTH WORKER

Document Confirmation Number :

Applicant	Name in Full		Date of Birth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Details			
Grade of Qualifica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 No	Date of Issued	Ministry of Issue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Republic of Korea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mentioned person has obtained Accredited Youth Worker Qualification.
It's based on the Article 21 of Framework Act on Juveniles.

Date :

Chairman of the Korea Youth Work Agency (직인)

5th JinYang Bldg, 190-3 Chungjeongno 2-ga Seodaemun-gu Seoul, Korea
Homepage : www.kywa.or.kr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예정 확인서

발급번호 :

신청인 (취득 예정자)	성명		생년월일	
	응시연도		자격등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한 결과, 청소년기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예정자임을 확인합니다.

※ 본 확인서의 효력은 자격취득 예정에 대한 증빙에 한하며, 자격증 교부 이전까지는 자격취득 사실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자격 취득 여부는 20 년 월 이후 교부된 자격증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직인)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시험 합격 확인서

발급번호 :

신청인 (합격자)	성명		생년월일	
	응시연도	응시급수	수험번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한 결과,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자는 소정의 자격 연수를 수료하여야만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부여(자격증 발급)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인)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시험 합격 확인서

발급번호 :

신청인 (합격자)	성명			생년월일	
	응시연도		응시급수	수험번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한 결과,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자는 소정의 자격 연수를 수료하여야만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부여(자격증 발급)됩니다.

년 월 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직인)